#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0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이재관·어기구·김종민

박정현 • 문진석 • 박수현

이정문 • 박지혜 • 황정아

주철현 · 강준현 · 박희승

장종태 · 정준호 · 조인철

채현일 • 윤건영 • 박홍배

이병진 · 임광현 · 박해철

오세희 의원(2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 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 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

(안 제25조).

#### 법률 제 호

#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"을 "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자가 이를"로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 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.

- 1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이나 장소의 주변 지역
- 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보행안전통로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당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
• 변경 또는 제거하는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	제25조(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
안전조치 의무) ① 인공구조물	안전조치 의무) ①
이나 물건, 그 밖의 시설을 신	
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	
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	
(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는 제	
외한다)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	
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	
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	
을 설치하여야 한다. <단서 신	<u>다만, 다음</u>
<u>설&gt;</u>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지역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,
	그 밖의 시설을 신설·개축·
	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
	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
	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
	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<u> &lt;신 설&gt;</u>	<u>1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</u>
	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u>
	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지
	<u>역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
	률」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

## <신 설>

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## 보호구역
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

   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

 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

   역 또는 상업지역

---.

③ (현행과 같음)